



##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출토 사면 문서목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ae(代) and Dae-beop(代法) of Silla in the Middle Ancient Period -  
focused on the four-sided wooden documents(Article 23) found by the 17th excavation  
of Haman area's Seongsan mountain fortress

---

저자  
(Authors) 전덕재  
Jeon Deogjae

출처  
(Source) [역사와현실](#) , (105), 2017.9, 181-214 (34 pages)  
[YŌKSA WA HYŌNSIL :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 (105),  
2017.9, 181-214 (3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역사연구회](#)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9872>

APA Style 전덕재 (2017).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역사와현실](#), (105), 181-21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2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대한 고찰

-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출토 사면  
문서목간을 중심으로

전 덕 재\*

머리말

1. 사면 문서목간의 현황과 판독
2. 사면 문서목간의 해석과 대법(代法)의 내용
  - 1) 문서목간의 해석
  - 2) 대법의 내용과 변천

맺음말

## 머리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17차례에 걸쳐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을 발굴조사하였다. 이 결과 현재까지 목서가 있는 목간 247점이 발견되었다.<sup>1)</sup> 지금까지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기초로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 2009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 2016 「신라의 북진과 서북 경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73

하여 중고기 신라의 지방행정체제와 수취체제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라인의 문자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문서행정의 실태도 부분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문헌에 보이지 않는 급벌척(及伐尺)이라는 외위 관등이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 다수 전하여서 신라 관등제 운영에 대한 새로운 지견(知見)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sup>2)</sup> 학계에서는 중고기에 건립된 금석문물 못지않게 함안 성산산성 목간들을 중고기 신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주목하고 있고, 현재 성산산성 목간에 기초한 연구성과를 통하여 중고기 신라사에 대한 지평이 크게 넓혀졌다고 이해되고 있다.<sup>3)</sup>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제17차 발굴조사) 함안 성산산성 부엌층과 동성벽, 배수시설간의 축조관계와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과정에서 양면에 목서가 있는 목간 10점, 한면에 목서가 있는 목간 12점, 그리고 사면 모두에 목서가 있는 목간 1점 등 총 23점의 목간을 발견하였다.<sup>4)</sup> 제17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목간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

-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목간사전』에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 224점이 소개되어 있고, 17차 발굴조사에서 23점의 목간이 더 발견되었다.
- 2) 윤선태, 2016 「신라의 초기 외위체제와 급벌척」 『동국사학』 61
- 3)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둘러싼 기존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전덕재,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신라문화』 31 : 2012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목간과 문자』 9, 22~24쪽 ; 윤선태, 2016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396~402쪽이 참조된다.
- 4) 제17차 발굴조사에서 발견한 목간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2017년 1월 4일에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최장미가 같은 날에 개최된 한국목간학회 제25회 정기발표회에서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를 발표하였고, 이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 최장미, 2017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목간과 문자』 18이다. 그리고 최근에 김창석, 2017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사면목간(23번)에 대한 시고」 『한국사연구』 177이 학계에 발표되었다. 이하에서는 전자의 논고에서 제시한 판독과 번역안을 발굴 주체인 국립

은 것은 사면 모두 목서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목간이었다. 여기에 대법(代法), ‘30대(代)’ 등의 표현이 보이는데, 대법은 신라에서 제정한 율령 편목의 하나로서 중고기 신라 율령체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주목되며, 게다가 ‘대(代)’의 의미를 추적하면, 중고기 신라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면 문서목간의 내용을 분석하면, 중고기 신라 문서행정체계의 일면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고는 최근에 공개된 사면 문서목간을 판독, 해석한 다음, 거기에 전하는 대법의 성격 및 ‘대(代)’의 의미를 규명하여 중고기 신라사회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제17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23점의 목간에 대한 종합적인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목간의 판독과 해석에 여러 가지 오류와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본고의 오류와 한계는 제17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목간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가 발간되고,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성과가 다수 제출된 후에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 1. 사면 문서목간의 현황과 판독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17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23면 사면 문서목간(이하 23면 목간)은 수종이 소나무이고, 길이 34.4cm, 각 면의 폭이 1.0~1.9cm이다. 1면과 3면이 상대적으로 좁고, 상단과 하단 모두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뒤틀림이 있으나 형상은 양호한 편

---

가야문화재연구소의 공식 견해로 간주하여, 판독과 번역 주체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라고 전제하고 논지를 전개하였음을 밝혀둔다.



문서목간 1면

문서목간 2면

문서목간 3면

문서목간 4면

이며, 2면 상부 왼쪽 모서리 부분이 약간 떨어져 나갔고, 2면의 표면이 손상되어 자획이 부분적으로 망실된 글자를 제외하면 목서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sup>5)</sup> 1면에 11자, 2면에 15자, 3면에 10자, 4면에 17자가

5) 23번 목간에 대한 현황은 최장미, 2017 앞의 논문 ; 김창석, 2017 앞의 논문에서

묵서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면의 맨 앞 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묵흔이 보여 어느 정도 판독이 가능하다.

발굴기관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한 23번 목간 묵서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면: 三月中眞乃滅村主懼怖白
- 2면: □城在弥卽尔智大舍下智前去白之
- 3면: 卽白先節奉日代法稚然
- 4면: 伊他羅及伐尺案言□法卅代告今卅日食去白之

1면의 3번째 글자인 ‘中’은 다른 글자보다 약간 작게 기재되어 있고, ‘中’과 ‘眞’자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존재한다. 3면의 ‘白’과 ‘先’자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발굴보고자는 3면의 5번째 글자를 ‘六十’의 합자(合字)로 판독하였고, 묵흔이 보이는 4면의 9번째 글자를 불명자(不明字)로 처리하였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23번 목간의 존재를 발표한 이후에 김창석이 23번 목간을 검토한 논고를 학계에 제출하였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판독문은 다음과 같다.

- 1면: 三月中 眞乃滅村主懼怖白
- 2면: □城在弥卽~~木~~智大舍下智前去白之
- 3면: 卽白 先節六十日代法稚然
- 4면: 伊托羅及伐尺案言廻法卅代告今卅日食去白之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2면의 6번째 묵서를 ‘~~木~~’자로 판독하였음에 반하여 김창석은 ‘~~木~~(等の 약자)’자로 판독하였다. 그리고 발굴보고자가

---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他’, ‘宀’자로 판독한 4면의 2번째와 7번째 글자를 각기 ‘汙’, ‘冢[審의 고자(古字)]’자로 판독하고, 판독하기 곤란하여 불명자로 처리하였던 4면의 9번째 글자를 ‘廻’자로 판독하였다.



필자 역시 ‘三月中’으로 시작되는 면을 1면으로 이해하였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제시한 것처럼 거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차례대로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발굴보고자와 김창석이 이견을 보인 2면의 6번째 글자는 ‘大(等の 약자)’자로 판독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23번 목간 2면 6번째 글자와 비교하기 위해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 묵서된 ‘宀’자와 6) 흥법사진공대사비(興法寺眞空大師碑)에 보이는 ‘大(大等)’자를 제시하

6)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책, 145~146쪽에 제시된 ‘爾(宀)’자 적외선 촬영 사진 자료 가운데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참고로 목간 번호는 『한국목간사전』에서 제시한 일련번호를 그대로 준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였다.7) 23번 목간 묵서와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서 산견(散見)되는 ‘示’자를 동일한 글자로 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 23번 목간 묵서에서 ‘示’획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음에 반하여 다른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示’자에서 ‘示’획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른다면, 23번 목간 2면의 6번째 글자를 ‘示’자로 판독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이것과 유사한 글자는 바로 흥법사진공대사비에 보이는 ‘示’자이다. 이에 주목하여 필자 역시 김창석과 마찬가지로 23번 목간 2면 6번째 글자를 ‘示’자로 판독하고자 한다.

3면의 5번째 묵서에 대하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김창석이 모두 ‘六十’의 합자로 판독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판독이 옳은 것일까? 『한국목간사전』에 소개된 함안 성산산성 출토 221번 목간(이하 성산산성 221번 목간)에 ‘六十日’이란 묵서가 보인다.8) 한편 함안 성산산성과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목간에서 다수의 ‘示’자 용례를 확인



23번 목간 3면 5번째 글자

할 수 있다. 23번 목간에 보이는 묵서는 ‘大’ 획 밑에 ‘十’ 획이 연속해서 있고, ‘大’ 획 위에 점이 있는 모습이다. 특징적인 면모는 ‘十’ 획이 ‘大’자의 ‘八’ 획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모습의 묵서로서 성산산성 216번, 221번 목간의 ‘示’자를 들 수 있다. 이밖에 성산산성 182번 목간, 국립경주박물관 부지 1번 목간 등에서 비슷한 글자를 발견할 수 있다.9)

7) 흥법사진공대사비의 ‘大示’ 탁본 사진은 하일식, 1999 「고려 초기 지방사회의 주 관과 관반-금석문 자료 분석을 통한 시론적 해석-」 『역사와 현실』 34, 55쪽 <그림 3>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8)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책, 523쪽



그런데 성산산성 221번 목간에서 ‘六十’으로 판독되는 글자를 보면, ‘六’ 획과 ‘十’ 획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十’ 획이 분명하게 ‘六’자의 ‘八’ 획 안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八’ 획 밖에 위치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더구나 ‘十’자의 ‘一’ 획이 ‘六’자 ‘一’ 획보다 약간 왼쪽으로 더 길게 뻗어 있음을 쉬이 인지할 수 있다. 같은 목간에 보이는 ‘추’자가 ‘八’ 획 안에 ‘十’ 획이 위치한 모습인 것과 명확하게 대비되는 특징적인 면모라고 하겠다. 이밖에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추’자 가운데 ‘大’자의 ‘八’ 획 안에 ‘十’ 획이 분명하게 위치하지 않은 사례가 여럿 발견된다. 다만 ‘十’자의 ‘一’ 획이 ‘大’자의 ‘一’ 획 또는 ‘八’ 획보다 왼쪽

9) ‘추’자의 용례에 대해서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123쪽에 제시된 적외선 촬영 사진 자료가 참고된다.

으로 더 길게 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추’자와 달리 ‘大’ 획 위에 점이 하나 더 보이긴 하지만, 월성해자와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여러 ‘추’자 및 성산산성 221번 목간에 보이는 ‘六十’ 목서와 비교하여 보건대, 23번 목간 3면 5번째 글자는 ‘六十’의 합자라기 보다는 ‘추’자로 판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sup>10)</sup>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4면 2번째 글자를 ‘他’자로 판독하였고, 김창석은 ‘沔’자로 판독하였다. 목간에서 ‘他’자의 용례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서 ‘陟’자의 용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陟’자의 ‘也’ 획과 23번 목간 4면 2번째 글자에 보이는 목흔을 비교하여 보면, 두 획이 일치하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23번 목간의 목흔은 ‘刁’ 획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필자는 김창석의 판독안을 수용하여 이 글자를 ‘沔’자로 판독하고자 한다.



23번 4면 2번째 글자

성산산성 28번  
목간(陟)

성산산성 154번  
목간(陟)

10) 박남수, 2017 「신라 범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신라사학보』 40, 신라사학회에서 23번 목간 3면 5번째 글자를 ‘추’자로 판독하고, 代法을 요역에 관한 법, 곧 역법과 관련시켜 이해하였음이 참조된다.

1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책, 214~215쪽에 제시된 ‘陟’자의 용례 가운데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23번 4면 7번째 글자(적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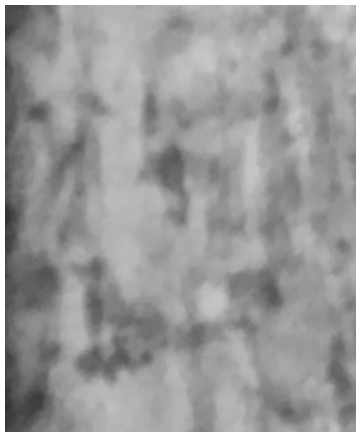
23번 4면 7번째 글자(사진)

23번 4면 7번째 글자는 목흔이 일부 마멸되었기 때문에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宀’ 획과 ‘木’ 획이 보이고, 두 획 사이에 점 같은 목흔이 발견되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宀’자로 판독하였다. 반면에 김창석은 ‘宀’ 획 밑 글자의 머리 부분을 ‘禾’ 획의 상부 양쪽에 점을 찍은 모습으로 이해하여 ‘宀(審의 고자)’자로 새롭게 판독하였다. 지금으로서는 이 글자를 정확하게 판독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다만 두 글자 가운데 어느 한 글자로 판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만은 어느 정도 수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문맥상 두 글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가에 초점을 맞추어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심(宀)’은 ‘살피다’, ‘조사하다’ 등의 뜻을 지닌 글자이다. 4면에 ‘言’, ‘告’란 글자가 보인다. 따라서 4면 7번째 글자를 ‘宀’자로 판독할 때, 3면의 묵서는 ‘이탁리급벌척이 살피 말하면서 ~라고 고하였다(伊託羅及伐尺宀言廻法卅代告).’라고 해석할 수 있다. 1면에 진내멸촌 촌주가 아뢰는 주체로 분명하게 보이고, 2면에 보고를 받는 주체로서 미죽등지 대사와 하지 등이



23번 4면 9번째 글자(적외선)



23번 4면 9번째 글자(사진)

언급되어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탁리급별척이 살펴 무엇을 고하였다는 해석은 문맥상 매우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식거(食去)’란 표현이 보이는 4면 목서의 내용은 분명히 이탁리급별척이 30대(卅代)와 관계가 깊은 어떤 곡물을 30일 만에 먹었던 사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된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을 두루 감안하건대, 4면 7번째 글자는 ‘宀’자보다는 ‘宀’자로 판독하는 것이 보다 더 설득력을 지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宀’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예정이다.

23번 목간 4면 9번째 글자에 대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불명자로 처리하였고, 김창석은 ‘廻’자로 판독하였다. 23번 목간에 보이는 글자를 자세하게 관찰하여 보면, 우변에서 ‘回’ 획, 좌변에서 ‘辶’ 또는 ‘辵’ 획과 비슷한 모습의 묵흔을 확인할 수 있다. 우변의 묵흔이 ‘回’ 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回’ 획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이에 의거하여 김창석과 마찬가지로 23번 4면 9번째 글자를 ‘廻’ 또는 ‘廻’자로 판독하고자 한다. 이상의 판독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면: 三月中 眞乃減村主懼怖白
- 2면: □城在弥卽亦智大舍下智前去白之
- 3면: 卽白 先節本日代法稚然
- 4면: 伊托羅及伐尺案言廻(迴)法卅代告今卅日食去白之

## 2. 사면 문서목간의 해석과 대법(代法)의 내용

### 1) 문서목간의 해석

23번 목간이 발견된 이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김창석이 23번 목간의 목서를 해석하였다. 이 가운데 먼저 발굴보고자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해석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면: 3월에 진내멸촌주(眞乃滅村主)가 두려워하며 삼가 아뢰입니다.
- 2면: □성에 계신 미즉이지(弥卽亦智) 대사(大舍)와 하지(下智) 앞에 나아가 아뢰입니다.
- 3면: 앞선 때에는 60일을 대법(代法)으로 하였는데, 저의 어리석음을 아뢰입니다.
- 4면: 이타리급벌척(伊他羅及伐尺)이 □법에 따라 30대(卅代)라고 고하여 지금 30일을 먹고 가버렸다고 아뢰입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23번 목간을 진내멸촌주가 중앙(왕경) 출신 관리에게 올린 보고서 형식의 목간으로 이해한 다음, 보고의 주체는 진내멸촌주이고, 보고받는 이는 미즉이지 대사와 하지로 보았다. 23번 목간 목서를 위와 같이 해석한 배경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해석의 전후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앞선 때에는 60일을 대법(代法)으로 하였는데, 이타리급벌척이 30대라고 고하고, 다만 30일을 먹고 가버려

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자, 이와 같은 내용을 진내멸촌주가 사죄하듯이 몸을 조아리며 미즉이지 대사 등에게 아뢰는 내용으로 이해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무슨 법 30대(卅代),’ ‘60일 대법’ 등의 표현을 주목하여 대법을 30일, 60일의 기간을 가진 법률적인 용어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대법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만을 근거로 하여 이타리급벌칙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게다가 30일 또는 60일 대법과 ‘지금 30일을 먹고 가버렸다’는 문장이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의문들은 약간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번 목간에 대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해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창석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면: 3월에 진내멸촌의 촌주가 괴롭고 두려워하며 아뢰니다.
- 2면: “□성에 있는 미즉등지(弥卽等智) 대사(大舍)가 하지(下智) 앞에 나아가 (사건의 자초지종을) 아뢰었습니다.
- 3면: 이에 (하지가) 말하기를, ‘앞서 60일 대법(代法)은 영성했습니다[雜然].’
- 4면: (그래서) 이타리급벌칙(伊沱羅及伐尺)이 살펴 말하면서 법을 우회하여 [廻法] 30대(卅代)로써 고했으니, 이제 30일의 식료(食料)는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지가 말했습니다.)”라고 (촌주가) 보고합니다.

김창석은 2면의 5번째 글자를 ‘六十’의 합자, 4면의 7번째 글자를 ‘宀’자로 판독한 다음, 위와 같이 해석하였다. 김창석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진내멸촌주를 보고하는 자, 미즉이지 대사와 하지를 보고받는 자로 이해한 것과 달리, 진내멸촌주가 보고하는 자, 어떤 중앙의 관리를 보고받는 자로 이해한 다음, 미즉등지 대사가 진내멸촌의 유력자인 이타리급벌칙이

60일 대법에 따라 모종의 일을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30일대(卅日代)로 고하고 일을 중단한 일에 대해 하지에게 아뢰자, 하지가 이를 듣고 ‘60일 대법이 영성하였으며, 법을 어긴 이탁리에게 30일의 식료를 주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진내멸촌주가 어떤 중앙 관리에게 보고한 것이 문서의 요지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sup>12)</sup>

김창석의 해석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해석안에 비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만약에 2면의 5번째 글자를 ‘六十’의 합자가 아니라 ‘卅’자로 확실하게 판독된다고 한다면, 김창석의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면 5번째 글자를 ‘六十’의 합자로 판독한 것과 위의 해석을 그대로 수궁할 경우, ‘30대(卅代)’를 ‘30일대(卅日代)’로 치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또한 미즉등지 대사가 하지에게 무엇인가를 아뢰었다(白)고 이해하였는데, 일반적으로 ‘白’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뢴다’ 또는 ‘사뢰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한자이다. 이에 따른다면, 대사라는 관등을 가진 미즉등지가 관등이 없는 하지에게 무엇인가를 아뢰었다고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밖에 1면에서 ‘白’의 주체, 즉 아뢰는 주체가 진내멸촌주로 전하는데, 2면에서 아뢰는 주체가 미즉등지로 바뀌었다고 이해한 점도 문맥상 선뜻 수궁하기가 곤란하다. 23번 목간이 행정체계를 통하여 보고한 내용을 담은 문서목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면에 보이는 ‘白의 주체’, 즉 ‘아뢰는 주체’는

12) 김창석, 2017 앞의 논문, 146~147쪽에서 代法은 중국과 일본 고대의 賦役令 혹은 軍防令에 해당하는 편목으로서 그 하위에 60일 혹은 30일간 동원해야 하는 力役의 종류, 각 役種의 기간과 役任, 차출 대상과 방식, 통솔과 관리, 人丁과 통솔자에 대한 식료 지급 등에 관한 條文을 두었을 것이라고 이해한 다음, 그 가운데 60일의 역역에 관한 규정을 23번 목간에서는 ‘六十日代法’이라고 표기하였다고 보았다.

1면에 나오는 진내멸촌주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에서 4면의 7번째 글자를 ‘채(采)’자로 관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采’자는 첫 번째로 ‘벼슬’, ‘관직’, ‘관리’란 뜻을 지니고, 두 번째로 ‘采’자와 같은 의미로서 제후가 경대부(卿大夫)에게 사여한 ‘봉지(封地)’, ‘채지(采地: 采地)’란 뜻을 지니고 있다.<sup>13)</sup> 이 가운데 두 번째의 뜻이 주목되는데, 문제는 중고기 신라에서 급벌척이란 외위를 지닌 지방의 유력자에게 봉지 또는 채지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식읍(食邑)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채(采)’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4면의 말미에 나오는 ‘今卅日食去’라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去)’는 제거한다는 뜻을 지닌 한자이다. 김창석은 이에 주목하여, ‘식거(食去)’를 ‘식료(食料)를 없앤다.’는 뜻으로 해석한 바 있다. 그런데 ‘去’가 동사 뒤에 와서 제거의 의미를 지니는 용법(使動用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남조의 송나라 유의경(劉義慶)이 지은 『세설신어(世說新語)』 덕행(德行)제1에 나오는 ‘庾公乘馬有的廬 或語令賣去’란 구절은 ‘유공의 말 중에 적로(的廬)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불길(不吉)한 말이므로) 혹자가 팔아버리라고 말했다.’라고 해석하거나 또는 『세설신어』 검색(儉嗇)제29에 ‘甘果--- 爛敗 公令舍去’란 구절은 ‘과일이 --- 썩어 문드러지자, 공은 내다버리라고 했다.’로 해석할 수 있다.<sup>14)</sup> 이와 같은 ‘去’의 용법을 주목하건대, ‘식거(食去)’는 ‘먹어버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今卅日食去’는 ‘지금 30일에 다 먹어버렸다.’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4면의 앞에 나오는 ‘采’자는 30일에 먹을 수 있는 곡물 또는 식량과 관련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채(采)’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1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1 『한한대사전』 4, 383~384쪽

14) 박영록, 1996 『『祖堂集』 意味虛化動詞研究』,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8쪽

23번 목간 4면의 9번째 글자로 추정되는 ‘廻’ 또는 ‘迴’자는 ‘돌다’, ‘돌리다’, ‘우회하다’, ‘회고하다’ 등의 뜻이 있다. 따라서 ‘회법(廻法)’은 ‘법에 따라 돌아보아’, 또는 ‘법에 의거하여 돌아보아’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상에서 살핀 내용을 종합하여 23번 목간 4면의 목서를 해석하면, ‘이탁리 급별척의 채(策)로 말하면, 법에 의거하여 돌아보아 30대(卅代)였다고 고하였으나, 지금 30일 만에 다 먹어버렸다고 아웁니다.’가 된다.

23번 1면 목간에 보이는 ‘농(儻)’은 ‘괴로워하다’, ‘심란하다’, ‘번민하다’ 등의 뜻을 지닌 한자이고, ‘포(怖)’는 ‘두려워하다’란 뜻을 지닌 한자이다. 이에 의거하여 1면의 목서를 해석하면, ‘3월에 진내멸촌주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아뢰었다.’가 된다. 종래에 진내멸촌을 오늘날 경남 김해시 진례면으로 비정되는 진례(進禮)와 연결시켜 창원 인근 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지만,<sup>15)</sup> 진례(進禮)와 진내멸(眞乃滅)을 동일 지명으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하지 않을까 한다. 진내멸촌의 정확한 위치 비정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면의 맨 앞 글자는 판독하기 어렵다. 진성(陳城)과 같이 고유한 명칭을 지닌 성을 가리키는지, ‘차성(此城)’ 또는 ‘본성(本城)’ 등과 같이 ‘이 성’ 또는 ‘본 성’ 등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1면과 2면에 나오는 ‘白’의 주체가 동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2면의 목서를 해석하면, ‘□성에 계신 미즉등지(弥即等智) 대사(大舍)와 하지(下智) 앞에 나아가 아웁니다.’가 된다. 3면의 1번째 글자는 ‘卽’자로 판독되며, ‘곧’으로 해석된다. ‘절(節)’은 ‘~때’를 가리키는 용례로 널리 쓰였다. ‘치연(稚然)’은 종래에 ‘어리석다’, 또는 ‘영성하다’로 해석하였다. ‘연(然)’은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널리 사용되었다. ‘치(稚)’는 ‘어리다’, ‘작다’, ‘적다’, ‘유약하다’, ‘유치하다’는 뜻을 지녔다. 3면의 목서에서 ‘대법(代法)’이 주어이므로, ‘치연(稚然)’은 ‘영성한(유치한) 모습이다.’로 해석

15) 김창석, 2017 앞의 논문, 132~134쪽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대(代)’가 식용이 가능한 곡물과 연관성을 지녔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양이 적다’는 의미를 지닌 ‘(양이) 적은 모습입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여 3면의 목서를 해석하면, ‘곧 아뢰기를, 앞선 때에(前에) “본일(本日: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법(代法)은 영성한(유치한) 모습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가 된다. 또는 ‘곧 아뢰기를, 앞선 때에(전에) “본일(本日: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법은 (양이) 적은 모습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정리하여 23번 목간의 목서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면: 3월에 진내벌촌주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아뢰었다.

2면: □성에 계신 미즉등지 대사와 하지 앞에 나아가 아뢰입니다.

3면: ① 곧 아뢰기를, ‘앞선 때에(전에) 본일(本日: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법(代法)은 영성한(유치한) 모습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② 곧 아뢰기를, ‘앞선 때에(전에) 본일(本日: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법은 (양이) 적은 모습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면: 이탁리급벌척(伊沔羅及伐尺)의 채(案)로 말하면, 법에 의거하여 돌아보아 30대(卅代)였다고 고(告)하였으나, 지금 30일 만에 다 먹어버렸다고 아뢰입니다.

## 2) 대법의 내용과 변천

앞에서 23번 목간 목서의 판독과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법(代法)’의 성격과 아울러 ‘30대(卅代)’의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핵심 관건은 ‘대(代)’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인가를 밝히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국내의 문헌과 금석문에서 23번 목간에 보이는 ‘대’의 의미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힘들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대 일본에서 ‘대(代)’가 토지면적의 단위로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집해(令集解)』 권12 ‘전령(田令)제9 조도이십이숙(租稻廿二束)’의 주석에 ‘경운(慶雲) 3년 9월 10일 격(格)에서 이르기를, 영(令)에 준하여 전조(田租)는 1단(段)마다 도(稻) 2속(束) 2과(把)를 부과한다<사방 5척(尺)을 1보(步)로 삼으며, 1보에서 미(米) 1승(升)을 얻을 수 있다>. 1정(町)마다 조(租)로서 도 22속을 부과한다. 영전(令前)의 조법(租法)에서는 숙전(熟田) 100대(代)에 조로서 도 3속을 부과하였다<사방 6척으로서 1보로 삼으며, 1보에서 미 1승을 얻을 수 있다>. --- 담당자는 시행하라.’고 하였다. 위의 기록에서는 경운 3년(706) 9월 10일 격은 고기(古記)에서 인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sup>16)</sup> 여기서 고기는 대보령(大寶令) 주석서(注釋書)의 일문(逸文)으로 알려졌다.<sup>17)</sup> 따라서 위의 기록에 나오는 영(令)은 701년에 반포한 대보령을

16) 『令集解』 卷12, 田令第9 租稻廿二束 “朱云 問 町租稻二十二束者 未知 十把爲束乎. 新令釋云 令稱一町租二十二束 是小斤者何. 古問答云 百代之租稻三束者 此則二段租也 依此一段充一束五把也 此則令釋稱令前束者. 古記云 慶雲三年九月十日格云 准令 田租一段租稻二束二把<以方五尺爲步 步之內得米一升> 一町租稻廿二束 令前租法 熟田百代租稻三束<以方六尺爲步 步之內米一升> 一町租稻十五束. 右件二種租法 束數雖多少 輸實猶不異. 而令前方六尺 升漸差地實 遂其差升亦差束實 是以取令前束 擬令內把 令條段租 其實猶益 今斗升既平. 望請 輸租之式 折衷聽勅者. 朕念百姓有食萬條即成民之豐饒 猶同充倉 宜段租一束五把 町租十五束 主者施行. 今依笨法以二十二束准計十五束者所得一束者 十四束三分之二”

참고로 『令集解』는 養老令의 주석서로서 9세기 중반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확설을 집대성한 책이다. 편자는 惟宗朝臣直木이라고 추정되고 있고, 찬술연대는 貞觀格式이 시행되기 이전의 貞觀 연간(859~876)으로 이해된다(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1993 「令集解」 『國史大辭典』 14, 吉川弘文館, 650~652쪽).

17) 井上光貞, 1976 「日本律令の成立とその注釋書」 『律令』(日本思想大系3), 岩波書店, 780쪽

가리키고, 영전(令前)의 조법(租法)은 대보령 이전에 시행된 전조법(田租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일본에서 수확량의 100분의 3을 전조로 거두었으므로,<sup>18)</sup> 대보령 시행 이전 시기에 일본에서 1대(代)에서 1속(束)의 도(稻: 이삭이 붙어 있는 벼)를 거두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수확량에 차이가 났으므로, 처음 벼 한 묶음을 가리키는 1속을 수확할 수 있는 1대의 면적은 일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차츰 시기가 지남에 따라 여러 해에 걸친 관습에 의해 대(代)의 면적이 일정하게 고정되는 경향을 띠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도량형제가 도입되자, 고려척(高麗尺) 방(方) 6척을 1보(步)로 정하고, 5보의 면적에 근사하게 1대(代)의 면적을 고정시킨 것으로 이해된다.<sup>19)</sup> 고대 일본에서 실제로 대(代)를 토지면적의 단위로서 사용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여럿 전하고,<sup>20)</sup> 또한 8세기의 자료에서는 토지면적의 단위를 속대(束代), 파대

18) 『延喜式』 卷26, 主稅寮上 “凡公田獲稻 上田五百束 中田四百束 下田三百束 下下田一百五十束. 地子各依田品 令輸五分之一 若惣計國內 所輸不滿十分之九者 勘出令填. 但不堪佃田 聽除十分之二. 其租一段穀一斗五升 町別一石五斗 皆令營人輸之”

고대 일본에서는 上田의 수확량을 法定獲稻數로 삼았다고 한다(龜田隆之, 1955 「日本古代に於ける田租・田積の研究」 『古代學』 4-2, 128쪽). 위의 기록에서 上田의 1町當 稻 수확량은 500束이었다고 하였고, 田租는 1町當 1石 5斗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1束이 1斗, 10斗가 1石이었으므로, 전조 1석 5斗는 상전 수확량의 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井上光貞等編, 1984 『日本歴史大系』 1(原始・古代), 山川出版社, 510쪽].

19) 坂本太郎, 1938 『大化改新の研究』, 至文堂, 342~343쪽; 龜田隆之, 1955 앞의 논문, 135쪽

唐尺이 도입된 이후 方 6尺(唐尺)을 1步로 하였고, 이와 더불어 方 5尺(고려척)을 1步로 하는 방식이 함께 사용되었다(윤선태, 2002 「한국 고대의 척도와 그 변화-고구려척의 탄생과 관련하여-」 『국사관논총』 98, 33-40쪽).

20) 己丑年(持統 3年; 689) 2월 25일에 건립된 采女氏塋域碑에 ‘形浦山地四千代’란 표현이 보이고, 또한 飛鳥藤原地區 石神遺蹟에서 발견된 목간에서 ‘百代’,

(把代)라고 표시한 사례도 발견된다.<sup>21)</sup> 1대의 10분의 1 면적을 파대(把代)라고 불렀고, 이러한 관행이 일반화되면서 벼 1속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1속대(束代)로 표현하여 파대와 구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고대 일본에서 이삭이 붙어 있는 도(稻) 1속에서 얻은 곡물(탈곡한 벼)의 양을 1두(斗), 이것을 찧어서 얻은 쌀[米]의 양을 5승(升)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도(稻) 1속의 중량을 1근(斤)이라고 표시하였다.<sup>22)</sup>

주지하듯이 통일신라에서 토지면적의 단위로서 결(結)·부(負)·속(束)을 사용하였고, 직접적인 자료는 전하지 않지만,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파(把) 역시 그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여기서 파는 한 움큼(한 줌), 속은 한 묶음(한 뭉), 부는 한 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파와 속, 부라는 단위는 이삭이 붙어 있는 벼짚[禾稈] 한 줌, 한 묶음(한 뭉), 한 짐을 각기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에서 기원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sup>23)</sup> 그런데 결(結)은 어의상으로 수확량과 직접 연결시키기 어렵다. 고대 일본에서 도(稻) 1속(束)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1대(代)라고 부르고, 후에 1대를 5보(步)라고 규정한 다음, 50대를 1단(段), 500대를 1정(町)이라고 하는 정단보제(町段步制)가 성립되었다는 전적법(田積法)의 추이를 염두에 둔다면, 신라에서 처음에 벼 한 묶음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1속(束), 10속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1부(負)로 규정하였다가 차츰

---

‘五十代’란 목서가 발견되었다[奈良文化財研究所, 2008 『飛鳥・藤原宮發掘調査出土木簡概報(二十三)』, 12쪽].

- 21) 讚岐國山田郡弘福寺領田圖(天平 7年: 735년)에 ‘束代’란 표현이 여럿 보이고 있고, 또한 法隆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天平 19年: 747년)에서 ‘把代’, 濱松市市場遺跡의 大溝에서 출토된 목간에서 ‘束代’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新井宏, 2003 「고대결부제의 복원과 代제의 기원」 『한국고대사연구』 30, 164쪽).
- 2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龜田隆之, 1955 앞의 논문, 124~131쪽이 참조된다.
- 23) 김용섭, 2000 「결부제의 전개과정」 『한국중세농업사연구-토지제도와 농업개발정책-』, 지식산업사, 152쪽

시기가 지남에 따라 관습에 의해 1속의 양과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이 고정되어 보(步)에 의하여 그 면적을 표시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100부의 면적을 어의상으로 소출량과 관계없는 단위인 1결(結)로 규정하면서 결부제(結負制)가 성립되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sup>24)</sup> 이와 같은 추론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결(結)이 토지의 비척(肥瘠)과 관계없이 일정한 면적을 가리키는 단위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sup>25)</sup>

결·부·속 가운데 속(束)은 이삭이 붙어 있는 벼(벼짚) 한 묶음(한 못)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 단위였다. 현재 삼국에서 순수하게 속을 수확량의 단위로서만 사용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는 전하지 않지만, 속이 토지면적 단위로 고착되기 이전에 그것은 수확량의 단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른다면, 고대 일본에서 속(束)과 파(把)를 수확량의 단위로 널리 사용한 관행은 바로 삼국의 그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아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삭이 붙어 있는 벼(벼짚) 1속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1대(代)라고 부른 관행 역시 삼국의 그것을 수용한 것이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이다. 이 의문을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단서를 좀처럼 찾기 힘들지만, 삼국에서 속(束)이 수확량의 단위뿐만 아니라 토지면적 단위로 사용되었고, 고대 일본에서 도(稻) 1속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1대(代)라고 불렀음을 염두에 둔다면, ‘속(束)’과 더불어 ‘대(代)’란 용어 역시 삼국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23번 목간에 보이는 ‘30대(卅代)’, ‘대법(代法)’이 유의된다고 하겠다.

앞에서 23번 목간 4면의 목서는 ‘이탁리급벌척(伊託羅及伐尺)의 채(案)로

24) 전덕재, 2001 「신라 중고기 결부제의 시행과 그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21, 256쪽

25)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1결은 절대면적으로서 대략 1200평(方33步) 정도였다고 알려졌다이우태, 2002 「고대 도량형제의 발달」 『강좌한국고대사』 제6권(경제와 생활),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317~334쪽 및 359쪽.

말하면, 법에 의거하여 돌아보아 30대(代)였다고 고(告)하였으나, 지금 30일 만에 다 먹어버렸다고 아웁니다.’라고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탁리급벌척이 채로서 30대를 지급받은 사실과 그것을 30일 만에 다 먹어버렸다고 아뢴 내용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면, 대법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만에 다 먹어버렸다(卅日食去)’라는 표현을 통해 이탁리급벌척이 채(策)로서 받은 30대(卅代)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30대’가 뜻하는 바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중고기 신라에서 1속의 수전(水田)에서 얼마만큼의 벼를 수확하였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려사』 권78 지32 식화1 전제(田制) 조세(租稅)조에 전하는 ‘성종 11년 판(年判)’ 기록에 근거하여 고려 초기 수전 1결당 벼 수확량을 추산할 수 있다. 이 기록 본문(本文)에 전하는 1결당 조세 수취량과 그것에 기초하여 벼의 수확량을 추산하여 제시한 것이 <표 1>이다.

<표 1> 고려 성종 11년 전품(田品)에 따른 1결당 조세 수취량과 벼 수확량

지목(地目)	전품(田品)	공전조액(1/4)	수확량(추산)
수전(水田)	상등	56.25두(斗)	225두(15석)
	중등	41.25두	165두(11석)
	하등	26.25두	105두(7석)
한전(旱田)	상등	28.125두	112.5두(7.5석)
	중등	20.625두	82.5두(5.5석)
	하등	13.125두	52.5두(3.5석)

<표 1>에 따르면, 고려 성종대에 벼를 수전 상등 1결(結)에서는 15석(石), 중등에서는 11석, 하등에서는 7석을 수확하였고, 한전(旱田)의 경우는 수전에 비하여 절반만을 수확하였다고 이해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나말여초의 경우도 고려 성종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sup>26)</sup> 그런데 나말여

초의 도량형 1승(升)은 350ml, 1석은 15두였다.<sup>27)</sup> 이에 의거하여 나말여초 1속(束)의 벼 수확량을 추산하면, 수전 상등의 수확량은 787.5ml, 중등은 577.5ml, 하등은 367.5ml가 된다.<sup>28)</sup>

23번 목간 4면에서 이탁리급벌척이 채(案)로서 받은 30대(卅代)를 30일 만에 다 먹어버렸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에서 1대(代)가 하루 한사람이 먹을 수 있는 벼를 비롯한 곡물의 양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신라 중고기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곡물을 먹었을까가 궁금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제8 성덕왕 6년(707) 봄 정월조에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으므로 한 사람에게 하루 속(粟) 3승(升)씩 7월까지 나누어 주었다(民多饑死 給粟人一日三升 至七月).’고 전한다.<sup>29)</sup> 8세기 신라에서 1승의 용량은 대략 200ml였던 것으로 확인된다.<sup>30)</sup> 이에 따르면, 8세기 초반에 신라 사람은 하루에 대략 벼 3승, 즉 600ml를 먹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세기 초반 신라인 한 사람이 하루에 먹었던 벼 600ml는

26)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 結負制의 내용이 동일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우태, 위의 논문, 325~334쪽).

27) 윤선태, 2000 「신라 하대 양제에 관한 일시론; 안압지 출토 양기의 분석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17·18합, 192~194쪽

28) 나말여초에 1升 = 350ml, 1斗 = 10升, 1石 = 15斗였으므로, 수전 上等 1束의 수확량[350ml × 10升(1斗) × 15斗(1石) × 15 ÷ 1000]은 787.5ml, 中等 [350ml × 10升(1斗) × 15斗(1石) × 11 ÷ 1000]은 577.5ml, 下等 [350ml × 10升(1斗) × 15斗(1石) × 7 ÷ 1000]은 367.5ml였다.

29)粟은 조(좁쌀)와 곁곡식을 가리키는 한자이다. 곁곡식은 곁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곡식을 이른다. 『삼국사기』에서 백성들에게 진휼할 때에粟을 지급하였다고 전하거나 또는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褒賞할 때에粟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다수 전한다. 한편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곁질을 벗기지 않은 벼를 가리키는租를褒賞으로 사여하였다는 기록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감안하건대,粟은 곁질을 벗기지 않은 벼, 즉租를 가리키는 한자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30) 이우태, 2002 앞의 논문, 355~356쪽

고려 초기 수전 상등과 중등, 하등 1속(束)에서 수확할 수 있는 벼의 양 평균에 해당하는 577.5ml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하겠다.

현재 중고기 신라에서 수전 1속에서 벼를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자료 및 당시 한 사람이 하루에 먹었던 벼의 양이 얼마였는가를 알려주는 자료가 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대와 나말여초의 사례를 염두에 두건대, 6세기 단계에도 중대 및 나말여초와 사정이 크게 달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앞에서 이탁리급벌척이 채(索)로서 받은 30대(卅代)를 30일 만에 다 먹어버렸다고 하였던 것에서 1대(代)는 이탁리급벌척이 하루에 먹었던 벼의 양과 관계가 깊었을 것이라고 추론한 바 있다. 그런데 중고기 신라에서 수전 1속에서 수확한 벼와 한 사람이 하루에 먹었던 벼(곡물)의 양이 거의 같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대(代)’는 수전 1속에서 거둘 수 있는 벼의 수확량을 가리키는 단위였다고 규정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추가적인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상에서 살핀 여러 가지 정황과 고대 일본의 사례 등을 두루 감안하건대, 필자의 추정이 결코 황당한 억측만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통일 이전의 신라에서 ‘속(束)’이 이삭이 붙어 있는 벼(벼짚) 한 묶음(한 뭉)을 가리키는 수확량의 단위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에 ‘속(束)’과 ‘대(代)’는 수확량의 단위뿐만 아니라 토지면적의 단위로서 서로 통용되었다고 짐작되며,<sup>31)</sup> 이러한 신라의 관행

31) 중대 신라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먹었던 벼 600ml는 탈곡한 곡물로서의 벼를 가리키고, 고려 초기에 水田 상등과 중등, 하전 1束에서 수확할 수 있는 벼의 양 평균 577.5ml 역시 마찬가지였다. 1束은 이삭이 붙어 있는 벼(벼짚) 한 묶음을 가리키는데, 중대와 하대 신라에서 이것을 탈곡하여 대략 600ml의 벼를 얻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통일신라의 사례를 감안하건대, 중고기에는 1束, 즉 1대에서 수확한 한 묶음의 벼(벼짚)를 탈곡하여 600ml보다 약간 더 적은 양의 벼(곡물)를 얻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고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라에서 이삭이 붙어

이 일본에 전해져서 도(稻: 이삭이 붙어 있는 벼) 1속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대(代)’라고 불렀던 것으로 이해하여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속(束)’과 ‘대(代)’가 수확량의 단위뿐만 아니라 토지면적의 단위로서 서로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면, 대법(代法)은 1대의 벼 수확량과 토지면적, ‘대’를 단위로 하여 징수한 토지세(전조) 또는 ‘대’를 기초로 하여 지급된 식료(食料)와 녹봉(祿俸),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給料) 및 기타 대체(代制)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된 법률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여기서 한 가지 해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진내멸촌주가 본일(本日), 즉 지금 시행하고 있는

---

있는 벼(벼짚) 한 묶음(1束)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1代라고 불렀고, 이와 더불어 신라에서는 벼 한 묶음의 수확량 역시 1代라고 불렀던 것으로 짐작된다.

- 32) 고대 일본에서 100代에서 田租로 稻 3束을, 1段에서 전조로 稻 2束 2把를 징수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감안하건대, 중고기 신라에서도 束 또는 代를 단위로 하여 토지세를 징수하였고, 아울러 祿俸 또는 직역에 대한 대가인 案(給料) 등도 수확량의 단위인 束이나 代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다고 할 때, 중고기 신라의 용량 단위인 石·斗·升과 束 또는 代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서』 고려전에서 고구려에서 石과 斗를 단위로 곡물을 징수하였고, 성산산성 목간에서도 石을 단위로 稗 또는 麥을 징수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신라는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가호 단위로 均額의 租와 調를 부과하는 세제를 운영하였는데(전덕재,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205~218쪽), 石과 斗를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관행은 바로 가호 단위로 균액을 부과하는 稅制(人戶稅)의 시행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부가세의 성격이 강한 토지면적 단위로 부과한 토지세(田租)의 경우는 토지의 肥瘠에 따라 수확량의 차이가 상당하였으므로 石·斗·升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고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束이나 代를 단위로 하여 부과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더불어 束 또는 代를 단위로 하여 관리들이나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녹봉이나 기타 여러 給料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23번 목간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유력한 자료로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대법(代法)은 영성한 모습이었다거나 또는 적은 양이라고 언급한 사실에 관해서이다.

촌락문서에 ‘촌주위답(村主位畓)’이란 토지지목이 보인다. 관모전·답(官謨田·畓), 내시령답(內視令畓)과 달리 촌주위답은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에 속하였다. 이것은 촌주가 소유한 토지 가운데 일부를 위답(位畓)으로 설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종래의 연구에 따르면, 통일신라에서 진휼(賑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결부(結負)에 따라 부가세로서 토지세를 징수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촌주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그의 사유지 가운데 일부를 위답으로 설정하여 토지세의 납부를 면제시켜 주었다고 한다.<sup>33)</sup> 중고기 신라에서도 촌주를 비롯한 외위를 수여받은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추정되는데, 이렇다고 하여 이탁리급별척에게 지급한 채(策)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듯하다. 채로 지급받은 30대(代)가 30일 만에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곡물의 양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채(策)’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는 23번 목간이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남산신성비에서 촌주(村主)와 정척(匠尺), 문척(丈尺) 등이 지방민을 통솔하여 남산 신성의 축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sup>34)</sup> 마찬가지로 이탁리급별척 역시 잔내멸촌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성산산성을 쌓을 때나 또는 성산산성과 관련이 깊은 어떤 국가사업을 수행할 때에 그 주민들을 지휘, 감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국가사업에 동원된 잔내멸촌 주민들에게

33) 전덕재, 위의 책, 298~315쪽

34) 남산신성비에서 邏頭와 道使 등과 같은 지방관의 명령을 받아 촌주와 장척, 문척 등의 지방유력자들이 행정촌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남산 신성 축조를 지휘, 감독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일식, 1993 「6세기 말 신라의 역역동원체계-남산신성비의 기재양식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현실』 10).

각 지방에서 거둔 피(稗)와 보리, 쌀 등을 식량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별도로 진내멸촌의 유력자인 이탁리급벌척에게도 식량과 더불어 주민들을 동원하여 성산산성을 쌓을 때나 국가사업을 수행할 때에 그 주민들을 지휘, 감독한 것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더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필자는 그것이 바로 23번 목간에 보이는 ‘채(案: 給料)’로서 판단하고자 한다. 목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탁리급벌척에게 채로서 대법(代法)에 따라 30대(卅代)를 지급하였으나 그것을 30일 만에 먹어버려 문제가 발생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추측컨대 사업 기간이 30일이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탁리급벌척이 채(案)로 받은 벼(곡물) 30대(卅代)가 30일 만에 다 먹어버릴 정도로 양이 적었기 때문에 이탁리급벌척 등이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이탁리급벌척이 대법에 따라 채(案)로서 지급받은 벼(곡물) 30대(卅代)를 30일 만에 다 먹어버려서 무엇인가 사단이 발생한 것을 통해서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대법(代法)이 매우 문제가 많았거나 또는 ‘대(代)’의 양이 매우 적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진내멸촌주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법은 영성하였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규정한 1대(代)의 양이 너무 적은 편이었음을 중앙에서 파견된 미족등지 대사와 하지 등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23번 3면의 목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진내멸촌주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번 목간을 제작한 시점[수]에 이탁리급벌척이 채(案)로서 지급받은 벼(곡물) 30대(卅代)를 30일 만에 다 먹어버리면서 무엇인가 사단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3번 목간 1면에서 진내멸촌주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아웁니다(懼怖白)’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상투적인 관행구가 아니라 진내멸촌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법이 문제가 있어, 이탁리급벌척에게 채(案)로서 지급한 벼(곡물) 30대를 30일 만에 다 먹어버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음을 중앙 관리에게 아뢴 때의 괴롭고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이상에서 23번 목간에 보이는 대법(代法)의 성격과 아울러 23번 목간 목서의 핵심 내용이 진내멸촌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법이 문제가 있어 결국 무엇인가 사단이 발생하였던 사실을 중앙 관리에게 보고한 것임을 살펴해보았다. 그런데 통일신라에서 속(束)과 부(負)는 토지면적의 단위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1결(結)이 약 1200평 정도의 절대면적이었던 것처럼, 1부, 1속도 각기 약 12평, 1.2평으로 역시 절대면적이었다. 중고기를 거치면서 1부와 1속이 수확량의 단위에서 토지면적을 가리키는 단위로 변화되었음이 분명한데, 이 과정에서 고대 일본에서 정단보제의 시행과 더불어 대(代)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추세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라에서도 벼 1속(束)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 또는 1속에 해당하는 수확량을 가리키는 대(代)라는 용어도 점차 사용하지 않는 추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나아가 7세기 이후에 이르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결·부·속을 토지면적의 단위로 삼는 법령을 만들어 널리 시행함에 따라 벼 1속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이나 수확량을 가리키는 대(代)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법 역시 폐지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이해된다.<sup>36)</sup> 대법 또는 ‘대(代)’에 관한 기록이 문헌이나 금석문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5) 23번 목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단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정보가 전하지 않고, 또한 이타리금벌칙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가에 대한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목간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36) 통일신라에서 結負 단위로 부가세적인 토지세(田租?)를 부과하였는데, 이때에 고려 초기와 마찬가지로 石·斗·升을 단위로 하여 토지세를 징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에서 발견한 사면 문서목간(23번 목간)의 판독과 해석, 그리고 거기에 기재된 대법(代法)의 성격과 ‘대(代)’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살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23번 목간의 판독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목서는 3면 5번째 글자이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김창석은 이것을 ‘六十’의 합자로 판독하였는데, 필자는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六十’이란 글자와 ‘牟’자의 용례를 참고하여, 5번째 글자를 ‘牟’자로 판독하였다. 그리고 4면의 7번째 글자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판독안을 받아들여 ‘案’자로 판독하였고, 9번째 글자는 김창석의 판독을 존중하여 ‘廻(또는 迴)’자로 판독하였다. 이와 같은 판독에 근거하여 23번 목간 목서를 ‘3월에 진내멸촌주(眞乃滅村主)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아뢰었다(1면)/ □성에 계신 미즉등지(彌卽等智) 대사(大舍)와 하지(下智) 앞에 나아가 아뢰입니다(2면)/ 곧 아뢰기를, ‘앞선 때에(전에) 본일(本日: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법(代法)은 영성한(유치한) [또는 (양이) 적은] 모습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3면)/ 이탁리급벌척(伊託羅及伐尺)의 채(案)로 말하면, 법에 의거하여 돌아보아 30대(代)였다고 고(告)하였으나, 지금 30일 만에 다 먹어버렸다고 아뢰입니다(4면).’로 해석하였다.

23번 목간 4면에서 이탁리급벌척이 채(案)로서 받은 30대(代)를 30일 만에 다 먹어버렸다고 언급한 것을 통하여 1대(代)가 한 사람이 하루에 먹었던 곡물의 양과 연관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중대와 나말여초의 사례를 참조하건대, 중고기 신라에서 1인이 하루에 먹었던 벼의 양과 수전(水田) 상등과 중등, 하등 1속(束)에서 수확할 수 있는 벼의 양 평균과 비슷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엿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고기 신라에서 대(代)는 수전 1속(束)에서 수확할 수 있는 벼의 양을 가리키는 단위였음을 추론

할 수 있는데, 본래 신라에서 1속은 이삭이 붙어 있는 벼 한 묶음(한 못)을 가리키는 단위였을 뿐만 아니라 벼 한 묶음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의 단위였던 바, 대(代) 역시 마찬가지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신라의 관행이 일본에 전해져 이삭이 붙어 있는 벼 1속(束)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1대(代)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속(束)과 마찬가지로 대(代) 역시 수확량의 단위뿐만 아니라 토지면적의 단위로서 서로 통용되었다고 추정되는 바, 대법(代法)은 1대(代)의 벼 수확량과 토지면적, ‘대’를 단위로 하여 징수한 토지세(전조) 또는 ‘대’를 기초로 하여 지급된 식료(食料)와 녹봉(祿俸),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給料) 및 기타 대체(代制)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진내멸촌주가 23번 목간을 제작하기 이전에 본일(本日) 시행하고 있는 대법(代法)이 문제가 많거나 대법에서 규정한 벼를 포함한 곡물 1대(代)의 양이 너무 적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목간을 제작할 당시에 이탁리급벌척(伊沓羅及伐尺)이 진내멸촌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성산산성을 쌓을 때나 어떤 국가사업을 수행할 때에 그 주민들을 지휘, 감독한 대가, 즉 채(菜: 給料)로서 지급 받은 30대에 해당하는 곡물을 30일 만에 다 먹어버려서 무엇인가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23번 목간은 이탁리급벌척이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떤 성에 있는 미즉등지(弥卽等智) 대사(大舍)와 하지(下智)에게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보고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통일신라에서 속(束)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널리 사용되었다. 속이 수확량의 단위에서 토지면적을 가리키는 단위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벼 1속(束)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 또는 1속에 해당하는 수확량을 가리키는 대(代)라는 용어는 점차 사용되지 않는 추세였고, 7세기 이후에 이르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결·부·속을 토지면적의 단위로 삼는 법령을 만들어 널리 시행함에 따라 대(代)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서 대법(代法) 역

시 폐지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이 본고에서 살핀 핵심 요지이다. 23번 목간은 결부제가 정착되기 이전 시기에 ‘대(代)’가 수확량의 단위뿐만 아니라 1속(束)의 벼를 수확할 수 있는 토지면적 단위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당시 부가세적인 성격으로 추정되는 토지세의 부과 방식과 그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전해 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대(代)’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법률인 ‘대법(代法)’의 운영을 통해 중고기 신라에서 율령과 문서행정을 기초로 하여 통치체제를 운영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 23번 목간의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제17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목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고, 23번 목간의 판독과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23번 목간의 판독과 해석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고기 신라에서 용량 단위로 사용한 석(石)·두(斗)·승(升)과 속(束)이나 대(代)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필자는 고대 일본의 문헌을 참조하여 대법(代法)의 성격과 대(代)의 의미를 추적하였는데, 고대 일본과 중고기 신라의 역사적 상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代法)의 성격 및 대(代)의 의미에 대한 필자의 이해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논고가 향후 중고기 율령체제와 수취 및 행정체계에 대한 이해의 진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23번 문서목간 연구의 진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투고일자 : 2017. 07. 19. 심사일자 : 2017. 08. 21. 게재확정일자 : 2017. 08. 21.  
주 제 어 : 성산산성, 사면 문서목간(23번 목간), 대법(代法), 대(代), 속(束), 결부제  
(結負制)

Key words : Seongsan mountain fortress, Four-sided wooden documents(Article 23),  
Dae-beop(Dae-law), Dae(代), Sok(束), Gyeolbu-system

참고문헌

- 龜田隆之, 1955 「日本古代に於ける田租・田積の研究」 『古代學』 4-2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목간자전』
- 김용섭, 2000 「결부제의 전개과정」 『한국중세농업사연구-토지제도와 농업개발정책-』, 지식산업사
- 김창석, 2017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사면목간(23번)에 대한 시고」 『한국사연구』 177
- 박남수, 2017 「신라 범홍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신라사학보』 40
- 박영록, 1996 『『祖堂集』 意味虛化動詞研究』,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新井宏, 2003 「고대결부제의 복원과 代制의 기원」 『한국고대사연구』 30
- 윤선태, 2000 「신라 하대 양제에 관한 일시론; 안압지 출토 양기의 분석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17·18합
- \_\_\_\_\_, 2002 「한국 고대의 척도와 그 변화-고구려척의 탄생과 관련하여-」 『국사관논총』 98
- \_\_\_\_\_, 2016 「신라의 초기 의위체계와 급별척」 『동국사학』 61
- \_\_\_\_\_, 2016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 이우태, 2002 「고대 도량형제의 발달」 『강좌한국고대사』 제6권(경제와 생활),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전덕재, 2001 「신라 중고기 결부제의 시행과 그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21
- \_\_\_\_\_,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 \_\_\_\_\_,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신라문화』 31
- \_\_\_\_\_, 2012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목간과 문자』 9
- 최장미, 2017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목간과 문자』 18
- 坂本太郎, 1938 『大化改新の研究』, 至文堂
- 하일식, 1993 「6세기 말 신라의 역역동원체계-남산신성비의 기재양식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현실』 10
- \_\_\_\_\_, 1999 「고려 초기 지방사회의 주관과 관반-금석문 자료 분석을 통한 시론적 해석-」 『역사와 현실』 34

<Abstract>

## A study on the Dae(代) and Dae-beop(代法) of Silla in the Middle Ancient Period

- focused on the four-sided wooden documents(Article 23) found  
by the 17th excavation of Haman area's Seongsan mountain fortress -

Jeon Deogjae

This study examines deco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four-sided wooden documents(Article 23) that were found in the 17th excavation of Haman area's Seongsan mountain fortress. This article also investigates the nature of Dae-beop(Dae-law: 代法) and the meaning of the word Dae(代) in the documents. In this study, the 5th letter in the 3<sup>rd</sup> side of Article 23 will be read as '牟' and the 7th letter of the 4th side as '糶'. Based on this interpretation, inscriptions in black ink in it can be read as 'In March, here I, headman of Jinnaemyeol village, inform you with suffer and fear(Side 1)'/ 'Here I report to Mijeukdeungji(弥卽等智) Daesa(大舍) and Haji(下智) in name unknown castle (Side 2)'/ 'Soon it is said that Daebeop of the early times was not in its well-developed form(Side 3)'/ 'Speaking of Itari Geubbeolcheok's Chae(糶; salary), though at first Itari reported that according to the law, his salary was 30Dae(代), he ate all and has exhausted all his salary in a month(Side 4)'. The word 'Dae' in the wooden documents was not only a unit of yield indicating a sheaf of rice(1Sok<束>), but also a unit of land area in which a sheaf of rice(1Sok) could be harvested. 'Dae-beop' was a law that stipulated grain yield and land size per 1Dae(代). It also provided criteria for various matt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Dae system. In the 7th century, by enacting and enforcing laws that made Gyeol(結)·Bu(負)·Sok(束) as units of area, Dae-beop was abolished as the term 'Dae' was no longer used.